

해양수산부 훈령 제618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 이유

2020년 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 점검결과(국무조정실)에 따라 수중, 시공 후 매몰구간 등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검사절차를 강화하고, 「항만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사항 및 관련절차 등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검사업무의 적정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중, 시공후 매몰구간 등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검사절차 강화

(안 제12조, 제13조)

- 검사업무 범위에 시공과정 동영상 확인 추가 및 음측기록지(준설공중) 확인 의무화
- 대수심(DL -20m 이상)구간의 경우 검사조서에 주요 공정별 작업사진 또는 동영상 검토광경 첨부 의무화
- 준설공중 준공검사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청에서 수로 측량업체 지정

나.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른 검사기한 단축 근거조항 반영(안 제10조)

- 검사 완료기간을 검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산정하도록 변경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검사기간을 7일로 단축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 5. 1.)사항 반영

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관련절차 반영 등(안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항만법」 전부 개정(2020. 1. 29.)에 따른 조문 이동사항 반영(제3조)
-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2020. 1. 29.)됨에 따른 조문 이동사항 반영(제3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2020. 2. 18.)됨에 따라 ‘수로조사’를 ‘일반수로측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등 변경된 관련절차 반영(제9조, 제12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9. 1. 15.)에 따른 조문 이동사항 반영 및 용어 수정(제14조)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8. 12. 31.) 개정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용어 수정 등(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자구 누락사항 등 반영(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2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제2조제5호”로, “신항만 건설사업”을 “신항만건설사업,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로조사를 시행하는”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는”으로, “준공검사와 수로조사의 수심측량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립해양조사원과 협의하여 수심측량 일정을 조정한 후”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 첨부하여”로 하고, 후단에 단서 “단, 수로측량업체는 발주청에서 지정(분리발주 등)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기성 준설량 10만 m^3 이상(암준설 1만 m^3 이상)으로 연도말 기성이 확정되는 사업 또는 준설 사업 준공(수로고시 대상은 제외)시”를 “일반수로측량이 실시 대상이 아니더라도”로, “인정될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인기관의 수로조사 성과 심사 결과를”을 “인정할 경우에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 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검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사진의 확인”을 각각 “사진 또는 동영상 확인, 음측기록지 확인(준설공중에 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로조사의 수심측량을 동시 시행”을 “일반수로측량을 실시”로, “수심측량 시 입회 확인 및 측량성과를 근거로 검사를 행하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공인기관의 수로조사를 시행하는 준설공사는 측량성과”를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수로측량업체의 발주청 지정 여부(준공공중에 한함)

제13조제2항 중 “(중요부분의 검측광경)”을 “(중요부분의 검측광경, 대수심(DL -20m 이상) 구간의 경우에는 주요 공정별 작업사진 또는 동영상 검토 광경)”으로, “(수로조사를 시행”을 “(일반수로측량을 실시”로 하며, “수로조사의 측량성과도)”를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으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21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호의 공사현황 표 및 별지 제3호서식 검사확인서 표, 별지 제4호서식 표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각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표 하단의 “3. 공사기록대장(건설공사집행규정 별지 제14호서식”을 “3. 공사기록대장(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표의 “금회기성액”을 “전회까지의 기성액”으로, “전회

까지의 기성액”을 “금회기성액”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의 “공사설계도서”를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표의 “ 월 일 와 계약분”을 “20 년 월 일 와 계약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로측량업체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후단 단서 및 제12조제1항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발주하는 공사(장기 계속사업의 경우 차수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건설공사“란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시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및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 사업에 대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제2조제5호의 -----</u> ----- <u>신항만건설사업,</u> <u>「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업,</u> ----- ----- ----- -----.</p>	<p>○ 관련법령 재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사항 반영</p>
<p>제9조(검사의 요청 등) ① (생략)</p> <p>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로조사를 시행하는 준설공사의 경우에는 준공검사와 수로조사의 수심측량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립해양조사원과 협의하여 수심측량 일정을 조정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9조(검사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는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 첨부하여 -----</p>	<p>○ 해양조사정보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관련절차 변경사항 반영</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③ 기성 준설량 10만³ 이상 (암준설 1만³ 이상)으로 연도말 기성이 확정되는 사업 또는 준설 사업 준공(수로고시 대상은 제외)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인기관의 수로 조사 성과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 ⑥ (생략)</p>	<p>----- . 단, 수로측량업체는 발주청에서 지정(분리발주 등) 하여야 한다.</p> <p>③ 일반수로측량 실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 인정할 경우에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 ----- .</p> <p>④ ~ ⑥ (현행 ④ ~ ⑥와 같음)</p>	<p>○ 해양조사정보법 제정에 따른 관련 절차 변경사항 반영</p>
<p>제10조(검사공무원의 임명 및 시행) ① (생략)</p> <p>②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0조(검사공무원의 임명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검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 .</p> <p>③ (현행과 같음)</p>	<p>○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른 검사기간 단축 근거조항 반영</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12조(검사자의 임무) ①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할 경우 감리자 포함) 및 도급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p> <p>1. 기성부분검사</p> <p>가. ~ 다. (생략)</p> <p>라.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u>사진의 확인</u></p> <p>마. ~ 아. (생략)</p> <p>2. 준공검사</p> <p>가. ~ 라. (생략)</p> <p>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u>사진의 확인</u></p> <p>바. ~ 차. (생략)</p> <p><신설></p>	<p>제12조(검사자의 임무) ① ----- ----- ----- ----- ----- ----- ----- ----- ----- ----- -----</p> <p>1.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 ----- <u>사진 또는 동영상 확인, 음측기록지 확인(준설공중에 한함)</u></p> <p>마. ~ 아. (현행과 같음)</p> <p>2.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 ----- ----- <u>사진 또는 동영상 확인, 음측기록지 확인(준설공중에 한함)</u></p> <p>바. ~ 차. (현행과 같음)</p> <p>카. <u>수로측량업체의 발주청 지정 여부(준설공중에 한함)</u></p>	<p>○기성검사절차강화를 위해 확인사항 추가</p> <p>○준공검사절차강화를 위해 확인사항 추가</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 -----.</p>	
<p>[별지 제2호서식] 건설공사 품질 관리서</p> <p>1. 공사현황 표의 본문 공사감독자(<u>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u>)</p>	<p>[별지 제2호서식] 건설공사 품질 관리서</p> <p>1. 공사현황 표의 본문 공사감독자(<u>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u>)</p>	<p>○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p>
<p>[별지 제3호서식] 검사확인서 표의 본문 감독자(<u>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u>)</p>	<p>[별지 제3호서식] 검사확인서 표의 본문 감독자(<u>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u>)</p>	<p>○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p>
<p>[별지 제4호서식] 공사관리 및 검사기록대장</p> <p>표의 본문 감독자(직,성명) <u>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회사, 성명)</u></p> <p>표의 하단 붙임 : 1, 계획평면도. 2. 표준단면도. 3. <u>공사기록대장(건설공사집행규정 별지 제14호서식)</u></p>	<p>[별지 제4호서식] 공사관리 및 검사기록대장</p> <p>표의 본문 감독자(직,성명) <u>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회사, 성명)</u></p> <p>표의 하단 붙임 : 1, 계획평면도. 2. 표준단면도. 3. <u>공사기록대장(건설공사시행·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u></p>	<p>○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및 훈령 개정사항 반영</p>
<p>[별지 제6호서식] 공사기성부분 내역서</p> <p>제2쪽 표의 본문 <u>금회기성액</u> <u>전회까지의 기성액</u></p>	<p>[별지 제6호서식] 공사기성부분 내역서</p> <p>제2쪽 표의 본문 <u>전회까지의 기성액</u> <u>금회기성액</u></p>	<p>○ 자구 수정</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별지 제10호서식] 준공검사조서</p> <p>표의 본문</p> <p>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u>공사 설계도서</u> 및 기타 약정대로 어 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p>	<p>[별지 제10호서식] 준공검사조서</p> <p>표의 본문</p> <p>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u>공사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u>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p>	<p>○자구 수정</p>
<p>[별지 제11호서식] 하자검사조서</p> <p>표의 본문</p> <p><u>월 일 와 계약분</u></p>	<p>[별지 제11호서식] 하자검사조서</p> <p>표의 본문</p> <p><u>20 년 월 일 와 계약분</u></p>	<p>○자구 수정</p>